

定 款 (社団法人 韩国原子力安全아카데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문화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Korea Academy of Nuclear Safety, KANS)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지역사무소 등) 이 법인은 필요시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별 지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5조(운영준칙) ①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한 설립허가 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③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증진 사업
2.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 인력양성 및 전문성 강화 사업
3. 원자력안전 공동체 구축 및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문화확산 사업
4.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조사·분석 및 정책 연구
5.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분야의 이해를 위한 각종 출판물의 발간
6. 원자력 및 방사선분야 안전증진을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기술협력
7. 원자력 및 방사선분야에 관한 국민 이해증진과 안전에 대한 조사, 계몽강습회, 세미나 및 교육
8.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분야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기술자문
9. 참여와 체험학습을 통한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이해증진 관련사업
10. 원자력과 방사선안전관련 정부, 유관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되는 수탁사업
11. 원자력 및 방사선분야 안전증진 관련 필요경비 충당을 위한 부동산 임대
12.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위 각 호의 부대사업

②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3장 회원

제8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회원 (이하 “회원”이라한다)은 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이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④ 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제10조(회원권의 양도 및 상속 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1조(회원의 탈퇴 등) ① 회원은 서면 등의 의사전달로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직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상근 이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평가를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선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명예이사장 또는 고문은 이 법인에 공이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14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임원의 선출 등)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장 직에 취임한 자는 이사회 선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 하고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본 법인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현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
3. 감사 결과 부당 사례 시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대한 시정 요구
4. 재산 현황 및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제19조(상근 임직원) 법인은 상근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5장 총회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21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기 7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제18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4조(의결사항) 총회는 제22조 제4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회원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을 참석시킨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출석하거나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자신과 법인과의 관계사항
-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7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회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회의 설치 운영) ① 이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이사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 ② 이사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회장의 사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사업 계획과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사장의 선출
4.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5. 상근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31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⑤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 제2항 및 제4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7장 예산·결산·회계

제35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36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

월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다.

제38조(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① 회원의 회비
- ② 찬조금 및 기부금
- ③ 기금
- ④ 기타 수입금

제39조(기금의 설치 및 운영) ① 이 법인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재원은 잉여금, 기부금, 정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③ 제1항의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1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등) ① 이 법인은 설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이 법인은 제27조 및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보고) 이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해산)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 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귀속된다.

제44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2. 5. 7.>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9.>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13.>

이 정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15.>

이 정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16.>

이 정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7.>

이 정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